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6 차 국 방 위 원 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의 범위에 상시근로자 포함 등〉
■ 염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80호)

2024. 11.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	3
2.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추가	10
3. 보상금 지급 대상 범위에 상시근로자 포함 등	13
※ 참고자료	20
1.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20
2. 경계지 설정 기준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2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염태영 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29.
3. 회부연월일 : 2024. 8.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공항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면 보상 및 지원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문제제기가 있고,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실제 근무 장소가 소음대책지역 내에 위치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구분한 소음대책지역이 같은 마을이나 같은 공동주택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의 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상에 차이가 발생하여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보상금액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여 보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사람도 소음 피해 보상 대상으로 포함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

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경계를 각각 고려하도록 하며,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책정하도록 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7호·제8호,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

□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¹⁾ 수립 시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각각의 사업의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6.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소음대책사업”이란 <u>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7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말</u>

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대책의 기본방향
2.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저감 방안
3. 소음피해 보상 방안
4. 채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음(국방부고시 제2020-42호)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7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4. (생략) <u><신 설></u> <u><신 설></u> 5. (생략) ③ · ④ (생략) <u><신 설></u>	<u>한다.</u> 8.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7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소음대책사업 6. 주민지원사업 7.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소음대책사업계획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

현행	개정안
<신 설>	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 4. 그 밖에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 및 지원사업의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 제7조의3(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 밖의

현행	개정안
제20조(중양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중양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② ~ ④ (생략)	<u>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u>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중양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u>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민간 공항의 소음피해를 보상하는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이라 한다)」의 경우 토지매수청구권,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소음피해를 보상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라 한다)」은 소음피해 보상금의 지급만을 규정하고 있음.

[민간 공항 및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체계]

구 분	민간 공항			군용비행장	
	「공항소음방지법」			「군소음보상법」	
	LdendB(A) ²⁾		보 상	웨 클 ³⁾	보 상(1인당)
1종	79이상		토지매수청구 및 손실보상	95이상	월 6만원
2종	75~79			90~95	월 4.5만원
3종	가	70~75	소음대책사업 ⁴⁾ 주민지원사업 ⁵⁾	80/85~90	월 3만원
	나	66~70			
	다	61~66			

이처럼 민간 공항과 군용비행장·군사격장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가 상이하게 규정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개정안은 민간 공항 소음피해에 적용되는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 사업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주민에게도 유사하게 적용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 2) Lden(엘·데이엔, day evening night): 항공기의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도출된 1일 항공기 소음도
- 3) WECPNL(웨클,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측정된 최고 소음도를 에너지 평균한 값에 일일평균 운항횟수를 시간대별로 가중하여 산출한 소음도
- 4) 공항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등이 있음
- 5)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복지사업(도서관과 같은 공동이용시설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소득증대사업(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이 있음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비교표]

법률	「공항소음방지법」		「군소음보상법」 개정안	
대상 시설	민간 공항		군용비행장 / 군사격장	
사업 실시 주체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		국방부장관	
사업 종류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주민복지사업 (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주민복지사업 (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3	학교·주민 주거용 시설· 주민 공동이용시설· 노유자시설의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학교·주민 주거용 시설· 노유자시설의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 다만, 개정안과 같이 보상금 외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연평균 1조 3,31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된 바,⁶⁾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⁷⁾

6) 소음대책사업 연평균 1조 500억원과 주민지원사업 연평균 2,812억원을 합한 값임(2026년부터 2030년까지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가정) (참고자료 1 참조)

또한, 군용비행장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장기적으로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용비행장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⁸⁾, 군사격장의 경우에도 군 구조 개편과 맞물려 중장기적인 군사격장 통합·권역화가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 변화의 추이를 고려하여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이전이 어느 정도 완료된 후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대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공항소음방지법」은 민간공항의 공항소음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므로 입법목적이 「군소음보상법」과 상이하고, 현행 「군소음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음 피해 보상금 외에 추가적으로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경우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하므로 정부 예산에 상당한 재정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7) 제20대국회에서 현행 「군소음보상법」 제정 당시(2019년)에도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규정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과도한 비용 발생을 이유로 현행법과 같이 보상금 지급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음.

8)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추가

- 개정안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는 현행 기준인 소음영향도 외에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필지의 경계 등도 소음대책 지역 지정 기준으로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u>소음영향도를</u>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소음대책지역을 변경 지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u><신 설></u> <u><신 설></u> ② ~ ④ (생략)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 ----- ----- <u>소음영향도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를</u> ----- ----- -----, ---- ----- -----. 1. 도시지역: 주민이 <u>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건축물이 속한 필지의 경계</u> .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2. 비도시지역: <u>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u> ② ~ ④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경우 도시 및 비도시 지역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경계지 설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지역의 경우 필지 경계, 비도시 지역의 경우 지형지물의 경계를 각각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체계상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경계지 설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⁹⁾, 현재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2024년 말까지 도시 지역 및 비도시 지역으로 구분하는 등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경계지 설정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작업이 진행중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¹⁰⁾. (참고자료 2 참조)

또한, 경계지 설정 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경우 법률 적용 기준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상황 변경 시 즉각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¹¹⁾.

9) 민간공항의 경우도 경계지 설정 기준에 관하여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10) 입법예고를 두 차례 실시(2024. 6. 26.~8.5. / 9.3.~9.13.)하였고, 2024. 11. 19.에 국무회의 의결 후 2025. 1. 1.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임

11) 국방부는 현행과 같이 시행령을 통해 경계지 설정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경계지 설정 기준 비교표]

법령	「공향소음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
대상 시설	민간 공항	군용비행장 / 군사격장
경계지 설정 기준	1. 도시지역: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¹²⁾ 주민 주거용 시설별 경계 2. 비도시지역: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	<현행: 제11조제6항> 해당 주민이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기준이 더 큰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봄
		<개정안> 1. 도시지역: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경계 2. 비도시지역: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

1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3. 보상금 지급 대상 범위에 상시근로자 포함 등

☐ 개정안은 소음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소음대책
지역 내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사람도 포함하고, 주민이 전입한
시기에 따라서 소음피해 보상금을 감액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소음피해 보상금을 책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소음피해 보상”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5. ----- -주민(소음대책지역 내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들 중-----.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①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실제 거주기간·근무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보상금액,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⑥ ----- -----. 이 경우 보상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가. 보상금 지급 대상 범위에 상시근로자 포함

- 현행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¹³⁾ 소음대책지역 외에 거주하되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음.

소음대책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외에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소음대책지역 내 상시근로자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근로자들의 소음피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바, 이에 대한 최종 결과를 논의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⁴⁾

- 국방부 및 기획재정부는 추가되는 재정 소요 및 타 법률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보상 요구가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임.

13)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은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해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4) 대구비행장 1건, 광주비행장 2건이 항소심 진행 중임. 1심에서는 3건 모두 거주 주민 대비 50%의 보상금을 근로자에 대하여 인정하였음

나. 전입 시기에 따른 보상금 감액 규정 삭제

- 현행 법령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전입 시기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보상금 감액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전입 시기별 감액 기준]

법령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전입 시기	1989.1.1. ~ 2010.12.31.	2011.1.1. ~
보상금 감액 기준	30% 감액	50% 감액

- 현행 보상금 감액 기준의 배경은 1988년 매향리사격장 소음 피해 사건¹⁵⁾, 2010년 대구비행장 소음 피해 사건 등 소음 피해 문제가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¹⁶⁾ 전입 시기별 감액 규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임.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주변의 소음 피해 문제를 인지한 상태에서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주변으로 전입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15) 1951년 미국 공군에 의하여 경기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에 만들어진 매향리 사격장은 1년 250일, 하루 600회에서 700회의 사격 훈련이 진행되어 소음 피해는 물론 오발탄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도 상당하여 1988년 6월 ‘매향리 미 공군 국제폭격장 철폐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일반에게도 널리 알려짐. 2005년 9월에 매향리 사격장은 폐쇄되었음

16) 대구비행장 소음 피해 관련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2006년에 1심 판결이 있었고, 이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이 2010년에 확정되어 주민들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되었음

그 전입 시기에 따라 보상금 일부를 감액하는 것임.

개정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규모가 소규모라는 점을 고려하여 감액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감액 규정의 제정 배경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¹⁷⁾

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보상금액 책정

- 개정안은 2010년 대법원 판례¹⁸⁾를 기준으로 책정된 현행 법령의 소음피해 보상금 기준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하려는 것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오랜 기간 피해를 감수해 온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17) 국방부는 현행 전입 시기에 따른 감액 규정은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음

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6가합23904(2006.12.5.)에서 대구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전투기소음의 특성, 소음정도, 주된 비행시간 및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월 45,000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고, 대법원 선고 2007다74560(2010.11.25.)에서 이를 확정하였음

[소음대책지역 및 보상금 기준]¹⁹⁾

구 분		소음대책지역		
		제3종	제2종	제1종
비행장	대도시지역	85이상 90미만(웨클)	90이상 95미만(웨클)	95 이상(웨클)
	기타지역	80이상 90미만(웨클)		
사격장	대형화기	84이상 90미만(dB(C))	90이상 94미만(dB(C))	94 이상(dB(C))
	소형화기	69이상 77미만(dB(A))	77이상 82미만(dB(A))	82 이상(dB(A))
보상금 (1인당)		월 30,000원	월 45,000원	월 60,000원

- 다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유사 입법례로는 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²⁰⁾의 “최저보장수준”, 「기초연금법」²¹⁾의 “기준연금액”,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²²⁾의 “공제료”,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²³⁾의

19) 군소음보상법 제정시 국방위원회(제369회국회 제1차 법안소위, 2019.7.15.)에서 소음기준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논의하였고,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보상금액은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시행령으로 규정하였음

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21)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은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연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2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공제료) ① 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에게 공제료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 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같이 다수의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고시하는 경우 등이 있는 반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²⁴⁾,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²⁵⁾과 같은 여러 보상 관련 법률 등에
서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입법례가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²⁶⁾ 등 다른 보상 관련 법률에
도 형평성 측면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달라는 개정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현행 소음피해 보상금의 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 규정된 보상금을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동 법률은 2019년 11월에 제정되어 2021년 12월에 최초로 소음
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였고, 2022년에 소음피해 보상금이 지급되기

23)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관리협약의 준수 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과의 어업소득의 격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보상금) ①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기·근무기간 및 복무형태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25)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보상금) ① 피해자중 제2조제2호가목(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나목(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여·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26)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위로금) 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사망한 날 또는 상이를 입은 날부터 보상결정이 있는 날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위로금을 지급한다.

시작한 것이므로 법률의 효과 및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현행 법체계상 여타 보상과 관련한 다른 법률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입법례가 없고, 다른 보상 관련한 법률과의 형평성 및 다른 법률에서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달라는 개정요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09

※ 참고자료

1.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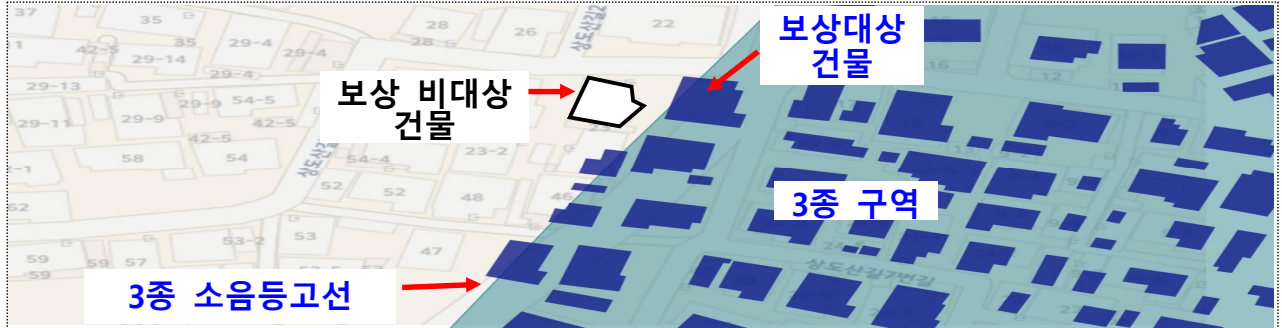
(단위: 억원)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소음대책사업	9,419	9,927	10,467	11,040	11,649
주민지원사업	2,522	2,658	2,803	2,956	3,119
합 계	11,941	12,585	13,270	13,996	14,768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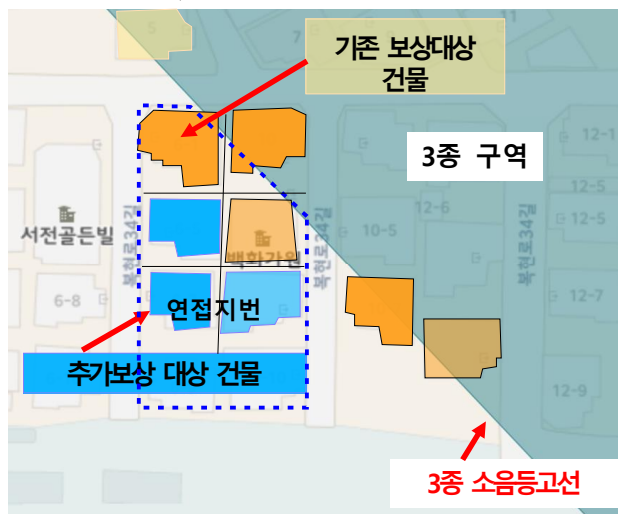
2. 경계지 설정 기준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소음등고선(3종구역)에 걸치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보상대상자를 판단



(개정안) 도시지역은 소음등고선(3종구역)에 걸치거나, 포함된 건물이 속한 필지의 **연접지번**까지 **비도시지역**은 도로·하천 등 **지형지물**을 고려하여 경계선 조정(19클 이내)

- 도시 : 경계에 걸친 건물의 연접지번 포함 (단, 공동주택 제외)



- 비도시 : 지형지물 기준으로 경계 설정



범례 : 기존 보상대상 건물 추가 보상대상 건물 지형지물 포함